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윤영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631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윤영희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정재동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치매는 조기 예방 및 지속적인 진료로 질환의 진행 속도나 증상을 늦출수 있는 질환으로서, 이에 치매 예방·관리,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
다. 시행계획 수립 등, 실태조사(안 제4조, 제5조).

라.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(안 제6조, 제7조)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치매관리법」제2조,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해당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3)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#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치매예방,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

계 기관·단체·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 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
  - 2.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
  - 3. 초로기(45~60세)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
  - 4.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
 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## □ 치매관리법

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904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8. 6. 12., 2020. 12. 29., 2023. 3. 28., 2024. 1. 2.〉

- 1. "치매" 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.
- 2. "치매환자" 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"경도인지장애" 란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.
- 4. "치매관리" 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말한다.
- 5. "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
  - 나.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
  - 다.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
  - 라.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
  - 마.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
  - 바.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6. "치매관리 전달체계"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하다.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

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1. 28.〉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·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1. 28.〉 ④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1. 28.〉